



## 성인 (혹은 노인) 주간보호 센터 (SADC) 참가자의 권리

- ◆ 참가자는 존중과 존경으로 대우받아야 한다.
- ◆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언어적, 성적, 정신적, 육체적, 또는 금전적인 학대를 받지 않아야 하며, 신체적 체벌을 받거나, 원치 않는 일이나 봉사활동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.
- ◆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약에 의한 구속 혹은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아야 한다.
- ◆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강압, 차별,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.
- ◆ 참가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활동을 자기 의사에 따라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.
- ◆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.

뉴욕시 노인국, SADC 규정, Title 9 NYCRR Section 6654.20

성인 (혹은 노인) 주간보호 센터 민원실

311로 전화

또는

[www.nyc.gov/aging](http://www.nyc.gov/aging)

또는

[sadc-ombuds@aging.nyc.gov](mailto:sadc-ombuds@aging.nyc.gov)